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라 한다)의 투자실적(이하“자체투자실적”이라 한다)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자격요건 등)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2006년 1월 이후에 성과배분계약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당해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투자금액 부분에 대하여 자체투자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 등) ① 제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자체투자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ESCO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동일 투자사업을 공동도급받는 경우에는 주관 ESCO만이 신청할 수 있다.

1.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확인이 필요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은 사업이 완료된 당해연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1월 이후에 완공된 사업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한 경우에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ESCO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투자실적 평가방법 등) ①협회 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ESCO가 신청한 자체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및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2. 2년 이상의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말 기성고를 근거로 자체투자실적 인정금액을 평가한다.
- ②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실적으로 기 인정된 사업인지의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 ③ 협회 회장은 “자체투자실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평가한 자체투자실적에 대하여 심의·확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자체투자실적은 협회가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신청한 ESCO에게 자체투자실적 인정금액을 서면으로 공식통보한 날로부터 실적으로서의 효력을 갖으며, 협회가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에 따라 발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확인서”에 매 분기말 투자실적으로 반영된다.

제5조 (사후관리 등) ① 협회는 자체투자사업의 이행여부, 에너지절감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ESCO는 협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체투자사업의 이행여부, 에너지절감량 등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협회장 또는 협회장의 위임을 받은 협회의 임원
 2. 당연직위원 : 에너지관리공단 ESCO 담당 부장, 산업자원부 ESCO 업무 담당관
 3. 위촉직위원 : 에너지절약 또는 ESCO 업무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 3인 이내
 4. 간 사 : 협회 사무국장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간사는 회의안건의 정리 및 서류보완요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협회가 평가한 자체투자실적 인정 등의 심의·확정
2. 기타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의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개최 및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구성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또는 친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심의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 스스로 심의를 받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 및 수수료) ① 협회는 자체투자실적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신청한 ESCO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신청한 ESCO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자체투자실적 평가에 소요되는 일수 및 기술인력[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의 취소)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4조 (실적의 취소, 제재 등) ① 협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자체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협회 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등 20일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사업의 사후관리가 완결될 때까지 해당사업의 자체투자실적 인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투자실적 인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ESCO에 대하여는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협회는 자체투자실적 인정 현황을 매 분기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6.08.08)부터 시행한다.